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6차 법제사법위원회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<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 구체화 >
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01719호)

2024. 9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동 찬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1.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 구체화	2

I. 제안경위

1. 제 출 자 : 정부 제출
2. 제 출 일 : 2024. 7. 12.
3. 회 부 일 : 2024. 7. 15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“그 밖의 정치단체”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(헌법재판소 2020. 4. 23. 선고, 2018헌마551 결정)함에 따라,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0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Ⅲ. 검토의견

1.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 구체화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□ 현행법 제94조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·방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치단체의 범위를 “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”¹⁾로 구체화하는 것임 (안 제94조).

현행	개정안
제94조(정치 관여) ① <u>정당이나 정치단체</u> 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 1. <u>정당이나 정치단체</u> 의 결성 또는	제94조(정치 관여) ① <u>정치단체</u> (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하며, 이하 “정치단체”라 한다)-----. 1. <u>정치단체</u> -----

1) 개정안은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70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함.

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705호) 제33조(정치 운동의 금지)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단체(이하 “정치단체”라 한다)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

1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 및 당헌·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
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
3.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후원회
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운동기구
5.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, 그 선거의 당선인·후보자·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

현행	개정안
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. ~ 6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2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□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²⁾ 중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“그 밖의 정치단체”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과 관련하여, “그 밖의 정치단체”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범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음.³⁾

○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“그 밖의 정치단체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710호, 정부제출)이 제출되었으며, 유사한 구조로 “군인”이 “그 밖의 정치단체”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3조⁴⁾

2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(정치 운동의 금지)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

3) 헌재 2020. 4. 23. 선고, 2018헌마551 결정

4)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3조(정치 운동의 금지)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

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5.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

상 “그 밖의 정치단체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05호, 정부제출)(이하 “「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”)이 제출되었음.⁵⁾

□ 한편, 「군형법」 제94조제1항⁶⁾은 군인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, 그 결정 또는 가입을 지원·방해하는 등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,

○ 개정안은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「군형법」 제94조제1항의 “정치단체”를 “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”로 구체화하는 내용임.

<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사항 >

구 분	현 행	개 정
군인의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대상 (군인복무기본법 제33조)	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	1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 및 당헌·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.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후원회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.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, 그 선거의 당선인·후보자·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

하는 것

5) 참고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「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09호, 정부제출)이 제출되어 있음.

6) 「군형법」 제94조(정치 관여)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.

□ 헌법 제12조 및 제13조⁷⁾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, 이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,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⁸⁾

○ 「군형법」 제94조제1항 중 “정치단체”에 관한 부분은 형벌의 구성요건으로,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어떠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여야 합헌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법 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모호하게 되며, 어떠한 것이 범죄인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 운영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⁹⁾는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원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“정치단체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이는 죄형법정주의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임.

7)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.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,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·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. (이하 각 항 생략)

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,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. (이하 각 항 생략)

8) 2020. 4. 23. 선고, 2018헌마551 결정

9) 헌재 1990. 4. 2. 선고, 89헌가113 결정; 헌재 1992. 2. 25. 선고, 89헌가104 결정

문 의 처

02)6788-5051